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5. 7, (금) / 총 4매(본문4)	
담당 부서 공정건설추진팀	담당 자	• 팀장 박진홍, 사무관 하철호, 주무관 김국남 • ☎ (044) 201-3572, 3497	
보 도 일 시	2021년 5월 1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9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「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」 제정안 행정예고

-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-
- 전환시 등록기준을 유예하고, 종전 실적을 가산하여 업종전환 지원 -
-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중 확정고시 예정 -

- 국토교통부 (장관 직무대행 윤성원)는 시설물유지관리업(이하 “시설물업”) 개편과 관련하여,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「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」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.
- 또한,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해 조기 전환 시 종전 공사실적을 가산하고자 하는 것이다.

□ 제정 즉시 시행되는 「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❶ 2020년 9월 15일*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❷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❶ 종합건설업(건축 또는 토목) 또는 ❷ 전문건설업(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)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.

* 특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('20.9.16)을 기준으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에게 업종 전환 자격을 부여

- 2021년 업종 전환 사전 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,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턴 전환된 것으로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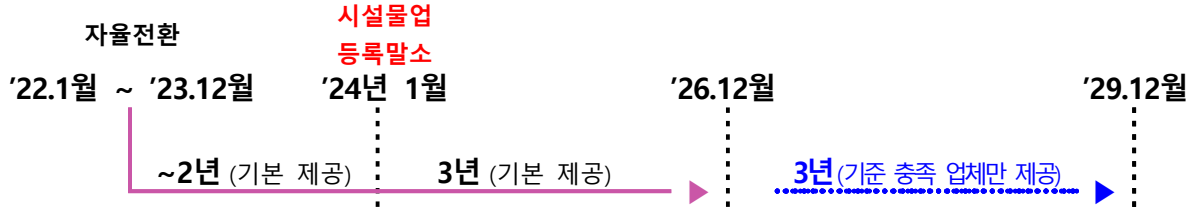
《 시설물업 업종전환 추진 일정 》

고시 제정일	'22.1월	'23.1월	'24.1월
시설물업 업종전환	사전 신청	자율 전환	등록말소

-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,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(입찰 참가자격)를 인정받을 수 있다.
- ② 부담완화를 위해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·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.
-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중 2026년(3분기)에 일정 기준*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.

* (기준) ❶ '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, ❷ '23~'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

《 등록기준 유예 특례 부여기간 》



③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/건축 분야로 구분하고, 그 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한다.

- 조기 업종 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 전환을 신청하는 시점*에 따라 전환되는 실적은 최대 50%까지 가산한다.

* ('21년 신청) 50% 가산, ('22년 신청) 30% 가산, ('23년 신청) 10% 가산

□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고시 제정일(행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 확정고시 예정)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*에서 업종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.

* (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 시) 건설협회 접수 → 시·도(시·군·구) 처리
(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 시) 시·도(시·군·구)에서 접수 및 처리

○ 업종 전환 처리가 완료되면,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'21년 8월 1일* 부터 '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(<https://kiscon.net>)'에 접속하여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,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·가산할 수 있다.

* 종전실적 전환신청 시기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KISCON) 개편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개편완료 후 각 협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

○ 다만,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.

□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“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,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,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-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“정책자료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31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하철호 사무관(☎ 044-201-357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